

일반 동아리 운영 규정

제정	1996. 9. 1.
개정	2000. 4. 1.
개정	2012. 3. 1.
개정	2012. 10. 1.
개정	2016. 3. 1.
개정	2018. 3. 1.
개정	2018. 8. 20.

제1조(목적 및 의의) 이 규정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 학칙 제39조에 의거 학생단체 중 동아리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개개인의 교양, 취미, 학술활동을 통한 정서함양과 면학분위기 조성, 올바른 대학문화 창달에 기여하고 인간사랑, 자연사랑, 문화사랑의 교육적 이념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분) 일반동아리(이하 "동아리"라 한다)는 취미·여가 동아리, 종교동아리, 봉사동아리, 기타 동아리를 말한다.

제3조(회원자격) 동아리 회원은 본 재학생으로 하며, 휴학 및 제적 시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그러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휴학생의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

1. 동아리 운영위원
2. 동아리 운영 및 행사에 열의를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자

제4조(등록요건)

1. 설립목적은 학칙에 부합되어야 한다.
2. 동아리 등록은 담당부서의 공고에 의해 소정의 등록양식을 작성,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득한 후 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
3. 모든 동아리는 소속 동아리의 설립목적에 찬성하는 회원이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4. 설립목적이 기존 동아리와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5. 모든 동아리는 지도교수를 선임하여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5조(신규등록) 동아리는 신규등록 시 소정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담당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동아리 등록 신청서(서식1호)
2. 동아리 연간 활동 계획서(서식2호)
3. 동아리회원 명단(서식3호)

제6조(재등록) 기존 동아리가 재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에도 제5조와 동일한 절차를 따른다.

제7조(지도교수 선정 및 임원선출)

1. 동아리 지도교수는 전임교원 중에서 선정하여야 하며,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지도교수가 사임 또는 기타사유로 퇴임 되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후임 지도교수를

선정하여 동아리 등록 신청서를 담당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임원이 선출 또는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명단을 담당부서에 즉시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재정 및 평가) 동아리 운영재정은 회원의 자체 회비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운영실적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경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평가 기준과 평가위원 등을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행사승인) 동아리 대표자는 행사 7일 전에 행사계획서를 담당부서로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제10조(등록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총장이 본 대학 학생지도위원회 회의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동아리 활동내용이 설립목적과 다르다고 판단될 경우
2. 활동이 학칙을 위반하였거나, 학교명예를 손상시켰을 경우
3. 행사실적이 부진하거나, 학생활동 참여실적이 부진할 경우
4. 불법집회로 인하여 사법적 절차에 계류중인 경우
5. 배정 받은 동아리실과 비품에 대해 파손 및 오손, 구조변경을 한 경우
6. 기타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경우

제11조(통·폐합) 활동 및 성격이 유사한 동아리는 본 대학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통·폐합 할 수 있다.

제12조(해체) (삭제) <2016.03.01.>

제13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생지도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